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534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Ⅰ. 개 요 ····· 1

1. 제안경위 ·····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Ⅱ. 검토의견 ····· 3

1.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3

2.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9

3.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16

Ⅰ.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17.

(3) 회 부 일 : 2026. 3.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영세 농업인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지세 면제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세제 부담을 조정하고 농업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 제도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최근 이란사태 등으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가 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출 과정에서 영세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 유지를 위해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경감을 위한 조치역시 지속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Ⅱ. 검토의견

1.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106조의2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연장
○ 면세대상 -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 (임종득의원안, 정희용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 (엄태영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영환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 (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2033년 12월 31일(김승수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엄태영의원안 2026. 3. 4. 발의(의안번호 17207),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정희용의원안 2026. 3. 19. 발의(의안번호 17625), 박상웅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22),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김영환의원안 2026. 5. 8. 발의(의안번호 18895), 김승수의원안 2026. 5. 12. 발의(의안번호 18930)

□ 위 9건의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

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임종득의원안, 정희용의원안), 2029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영환의원안), 2031년 12월 31일(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또는 2033년 12월 31일(김승수의원안)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은 1972년 신설된 것으로, 당초 연근해어업용 선박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6년에는 농업용 기계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 1990년부터 농업용을 추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임업용 석유류를 추가하였음. 또한 1999년부터 일몰제가 도입되어 2026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됨.

한편, 2012년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2012. 1. 2.)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3년 단위로 연장하되,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 농업·입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8,954억원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정부는 감면세액이 2025년 9,846억원, 2026년에는 1조 10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세 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부가가치세	2,565	2,893	3,654	3,132	2,969	4,090	4,218
개별소비세	289	376	276	239	232	271	279
교통・에너지・환경세	7,997	7,421	5,019	4,692	4,973	4,599	4,697
교육세	1,243	1,169	794	739	780	886	910
소 계	12,094	11,859	9,743	8,802	8,954	9,846	10,104

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여 제외되었으며, 면제규모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자료: 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2025년 기준 면세유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경유가 1,625천㎘로 면세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등유 365천㎘, 휘발유 187천㎘ 순을 보이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단위: 천㎘)

유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휘발유	211	202	201	194	189	190	187
경유	1,782	1,855	1,766	1,666	1,662	1,626	1,625
중유	42	44	38	34	20	19	21
윤활유	8.3	8.3	8.1	7.1	7.1	7.2	7.1
LPG	11	15	17	19	18	19	21
등유	446	442	440	422	349	340	365
부생연료유	-	-	-	-	28	26	29
합 계	2,500	2,567	2,472	2,344	2,274	2,228	2,255

자료: 재정경제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농·임·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2025년 어가·임가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가 · 어가 · 임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21년	47,759	64.1	52,392	70.3	38,133	51.2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37,383	44.5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38,405	44.4	86,464
2025년	54,667	60.5	58,980	65.2	38,307	42.4	90,405

주: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농업·어업·임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비임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임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동 제도를 통해 농·임·어업인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지원하고 농·임·어업 생산 부가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농·임·어업인들의 가

계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둘째, 농·임·어업 생산물이 지니는 필수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동 조세특례는 농·임·어업 생산이 유발하는 연쇄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가되는 가격 부담을 줄여 농·임·어업 생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면서 국민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한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1]으로서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6년 말에 도래함에 따라 현재 심층평가가 진행 중임. 따라서 일몰연장의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2]

○ 적용기한에 대해 각 개정안은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2033년 12월 31일까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2) 재정경제부는 의무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세법개정 시 연장 여부 및 필요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면제(제116조제1항)	□ 인지세 면제(제116조제1항)
○ 면제대상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어촌계, 엽연초생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증서(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 1억원 한도)(제5호) - 어린이예금통장,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어촌계, 엽연초 생협, 산림조합 조합원의 예·적금 및 통장(제6호) -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어업경영 규모 확대사업에 대한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증서(제7호) - 농협조합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또는 주택건축용 자재 외상구입 서류(제9호) - 「공유수면매립법」상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 - 창업기업이 2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제19호)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제116조제2항제3호)	□ 적용기한 연장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 <u>2026년 12월 31일</u>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 <u>2028년 12월 31일</u>(임종득의원안) - <u>2029년 12월 31일</u>(박성훈의원안) - <u>2031년 12월 31일</u>(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제19호 - <u>2026년 12월 31일</u>	○ 제19호 - <u>2031년 12월 31일</u>(윤준병의원안)
	□ 부 칙

현 행	개 정 안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박상웅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22),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위 5건의 개정안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예·적금, 농어촌정비사업·농지은행사업 등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서류 등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영세 농어민 등 조합원의 생활안정 지원 및 실질적 소득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임종득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2년, 박성훈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로 3년, 김성원의원안, 박성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은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임종득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박성웅의원안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서, 예·적금 및 통장,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증서,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등에 대해서만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반면 윤준병의원안은 창업기업이 창업 2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위해 작성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인지세법」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3)]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어업 관련 융자 서류 등에 관한 인지세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는 1970년 도입되었음. 제도 신설 당시에는 농협 등으로부터 융자 등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가 시행되었고, 예금·적금증서, 통장,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변경 등에 관한 서류는 1974년부터,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구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및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는 1982년부터, 창업기업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1997년부터 인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지세 면제 특례대상 문서는 다음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른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구 분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일몰기한
제5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조합·중앙회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단,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 합계액 1억원 이내 한정)	2026.12.31.
제6호	어린이예금통장,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3)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 분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일몰기한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제7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정주생활사업과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제9호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11호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19호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제31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024.12.31.

주: 위에 적시되지 않은「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제1항의 다른 호는 현재 모두 삭제

□ 인지세 면제 금액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제5호, 제19호),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변경 등에 관한 증서(제7호),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관련 서류(제9호),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의 경우 기재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이며,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제6호)에 대해서는 100원의 인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에 의해 면제되는 인지세액]

구 분	증서 기재금액	세액	비 고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으로부터의 금전소비대차(1억원 이하) 관련 증서(제5호) ·농어촌정비사업·농지은행사업 등 관련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서류(제7호)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등 관련 서류(제9호)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 ·창업자가 창업 2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제19호)	1,000만원~3,000만원	2만원	*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① 과세문서에 표기된 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계산된 금액 ②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2만원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5,000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	35만원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통장 등(제6호)	(해당사항 없음)	100원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및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동 조세특례는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제도가 유지되어 왔으며, 위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개정안에 따라 일몰이 종료하는 농·임·어업인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가 연장될 경우 농·임·어업인 및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소득보전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2025년 어가·임가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가 · 어가 · 임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21년	47,759	64.1	52,392	70.3	38,133	51.2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37,383	44.5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38,405	44.4	86,464
2025년	54,667	60.5	58,980	65.2	38,307	42.4	90,405

주: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농업·어업·임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비임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임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부수비용인 인지세를 면제하는 것은 농·임·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제도”가 선정·평가되었는데, ① 동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소득 향상, 서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적 생활 도모 측면에서 특례의 정책목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②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등과 신용수준이 낮은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소비대차증서 인지세 한도(1억원) 상 고액 자산 농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③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낮은 수혜대상일수록 동 조세특례를 통한 지

원효과가 커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므로, 동 면제 제도를 일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음.

□ 다만, 적용기한에 대해 각 개정안은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4)]

4) 재정경제부는 지원실적,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3.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제121조의23제10항)	□ 적용기한 연장
○ 면제대상 -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자회사 포함)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임종득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박성훈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김성원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신성범의원안 2026. 4. 21. 발의(의안번호 18480),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위 5건의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여 농협중앙회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임종득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2년, 박성훈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로 3년, 김성원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은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는 인사, 급여, 교육, 유통 등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전산시스템의 운영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원칙적으로는 농협중앙회, 농협은행과 농협정보시스템이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탁한 법인으로부터 시스템 운영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10항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운영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5].

□ 동 면세제도는 2012년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5회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2009년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각각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6]을 국회에 제출하였고[7], 이후 해당 내용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협정보시스템은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 전에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구조개편 전부터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 왔음. 따라서 농협정보시스템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020호, 2009. 12. 16. 정부 제출)

7) 정부가 농협의 구조개편을 추진한 것은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음.

(대안)」[8]에 반영되어 2012년 3월 2일 시행되었음.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농협에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조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데,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그 중 하나였음. 현재의 농협중앙회, 농협은행과 그 외 농협 자회사는 구조개편 전에는 같은 법인(농협중앙회)에 속해 있었으므로 상호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구조개편으로 법인이 분리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 제도는 2011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으로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왔음.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연혁]

개정일	개정 내용
2011. 12. 31. (도입)	중앙회 →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보·손보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2013년 12월말)
2014. 1. 1. (1차 개정)	적용기한 4년 연장(~2017년 12월말)
2016. 12. 20. (2차 개정)	면제대상 전산용역 추가: 농협은행 → 중앙회, 금융지주회사, 농협생보・손보사
2017. 12. 19. (3차 개정)	적용기한 2년 연장(~2019년 12월말)
2019. 12. 31. (4차 개정)	적용기한 2년 연장(~2021년 12월말)
2021. 12. 28. (5차 개정)	적용기한 2년 연장(~2023년 12월말)
2023. 12. 31. (6차 개정)	적용기한 3년 연장(~2026년 12월말)

□ 농협 전산용역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하나로유통·양곡과, 금융지주·은행·생명·손해보험에 전산용역을 공급하고 있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811085호, 2011. 3. 10.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안)

으며, 공급가액은 2025년 기준 265억 6,100만원임. 한편,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및 금융지주·생명·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공급가액은 2025년 기준 381억 6,200만원 수준임.

[농협중앙회 공급 전산용역 현황]

수탁기관	위탁기관	위탁 전산시스템	전산용역 공급가액(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농협 중앙회	농협경제지주	·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경제·유통시스템 ·인프라, 통신, 정보보호 등 ※ 25년 이후 유통시스템 제외	16,763	15,543	12,971
	농협하나로유통		1,388	1,309	985
	농협양곡		39	42	41
	NH농협금융지주	·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	593	829	696
	NH농협은행	·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범농협 통합구매 등	8,920	8,954	9,240
	NH농협생명	·관리시스템 ·범농협 통합구매 등	1,198	1,215	1,315
	NH농협손해보험		1,155	1,183	1,313
	소 계		30,056	29,075	26,561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인프라 및 보안 운영 ·디지털금융 일부 등	38,767	38,768	35,190
	NH농협금융지주	·관리시스템 일부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1,588	1,999	2,262
	NH농협생명	·관리시스템 일부 ·전산기기수급관리 등	317	359	416
	NH농협손해보험	·관리시스템 일부 ·전산기기수급관리 등	204	254	294
	소 계		40,876	41,380	38,162
합 계			70,932	70,455	64,723

주: 전산용역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의미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규모는 2023년 70억 9,300만원 2024년 70억 4,600만원, 2025년 64억 7,200만원 수준임. 2025년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별 감면규모는 농

협중앙회 35억 1,900만원, 농협은행 9억 2,400만원, 경제지주 12억 9,700만원 등 기타 회사 20억 2,900만원이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면제	농협중앙회 부담분	3,877	3,877	3,519
	농협은행 부담분	892	895	924
	기 타	2,325	2,273	2,029
	계	7,093	7,046	6,472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정부가 주도한 농협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농협은 농업인의 이익을 위하여 농민자본으로 구성된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협의 구조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까지 농협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당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개정 관련 합의사항으로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9].

둘째, 농협중앙회 등은 회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농업·축산 경제사업, 상호금융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협중앙회 등의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임.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고유목적사업 재원의 감소로 농업인 지원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농협중앙회가 공급받는 전산용역은 대부분 농협조합을 위한 것으로서 동 과세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협조합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2025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산용역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부담 구조를 보면, 총 감면세액 35억 1,900만원 중 76%인 26억 6,400만원을 농협조합이 부담하고

9) 당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농협법 개정관련 합의사항'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법 통과 이후 실사를 하여 확정된 자본금의 30% 이상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함.
- 정부는 농협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다른 농업부문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
- 정부는 사업구조개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수준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함.

있는바, 동 면제 특례가 일몰될 경우 농협조합의 세부담이 26억 6,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2025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산용역 비용 분담 구조]

(단위: 백만원, %)

구 분	농협조합	중앙회	경제지주	합 계
분담금액	26,641	6,971	1,578	35,190
감면세액	2,664	697	158	3,519
비 중	76	20	4	100

자료: 농협중앙회

□ 다만, 동 과세특례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적 성격임을 감안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면세는 농협이 분할된 이후 안정화를 위한 일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사업구조 개편 완료 이후에도 동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은 2012년부터 실시되어 2017년 경제사업 완전 분리를 통해 최종 완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 당시 적용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의 한시적 운영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관행적 연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전산용역의 경우 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민 지원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 개편 이후 조직 안정화의

임시방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10]

둘째, 타 법인에 대해서는 전산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바,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11]

「부가가치세법」상 법인격이 분리된 주체 간의 용역 공급은 과세거래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임. 이에 따라 일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명칭사용권(상표권) 및 전산시스템 위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경제·금융지주회사 간 용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상 적정하지 않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3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464억원(연평균 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10)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8)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3.

11)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8)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3.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일몰기한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2028년말	△83	△88	-	-	-	△170	△85
~2029년말	△83	△88	△93	-	-	△263	△88
~2031년말	△83	△88	△93	△98	△103	△464	△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감면기간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는데, 각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장할 경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12)]

문 의 처
02)6788-5147

12)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 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 및 필요시 제도개선 필요사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